

제433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록**
(임시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7일(화)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3)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0)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4)
5.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6.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6)
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1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2)
1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7)
1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1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5)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1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1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1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9)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1)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50)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6)

상정된 안건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 3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3) 3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0) 3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4) 3
5.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3
6.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6) 3
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3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3
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3
1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2) 3
1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7) 3
1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3
1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5) 3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3
1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3
1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4
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4
1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4
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4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9) 4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1) 4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4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4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4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4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4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4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4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4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50)	4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6)	4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내용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회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3)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0)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4)
5.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6.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6)
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1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2)
1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7)
1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1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5)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1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1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1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9)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1)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50)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6)

(14시05분)

○소위원장 정태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임명현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소위 자료 첫 번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6년 1월 29일에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봤고요.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세입세출의 연계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제정된 법률 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지난번 통과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서 이 법도 시행일을 조정해야 될 거고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도 같이 여기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기획예산처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경우 사업 간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회계와 기금 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어느 기금하고 어떻게 정비가 필요한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의견이 있나요? 될 정비하라는 말인가요?

○전문위원 임명현 지금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서 자료 7쪽에 보시면 이미 일반회계나 기금 이런 데서 여러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와 관련된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일반회계하고 사업 간 조정이 있어야 될 걸로 보아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누가 중복된 걸 정비합니까?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네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산 사업을 심사, 각 부처들하고 요구를 받고 협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그쪽으로 사업들을 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이관을 할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법에 별도의 무슨 규정이라든지 내용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부대의견도 필요 없어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부대의견은 혹시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대로 넘어가면……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넘어갈까요?

○박수영 위원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이나 국회나 전문위원 모두 다 공통된 의견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면 또 그대로 지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규근 위원님 반대 안 하시면 부대의견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차규근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대의견 넣는 데 대해서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도 동의하시지요? 부대의견이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항부터 4항까지입니다.

소위 자료 16쪽입니다.

먼저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 수를 25명에서 26명 이내로 늘리고 심의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금운용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및 금융 실무와 직접 연관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번,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안입니다.

민간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상생 차원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3번,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접투자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간접투자대상에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하되 안도걸 의원님 안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까지 범위를 넓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는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기금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등에서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투자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기금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공급망 외의 분야에 공급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5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우선매수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지배구조 보호를 위한 예외적 규정이지만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우선매수권을 존치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매수권 부여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표를 보시면 끝부분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안도걸·박수영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돼 있는데 저희 검토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답변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첫 번째로 16쪽에 있는 공급망위 위원 정원 확대 필요, 기금 운용심의회 정원 확대 필요성에 따른 위원 수 확대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기금에 대한 정부 출자사업과의 정책적 연계, 기금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예산처 추천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있어서……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하나씩 정리하고 갑시다.

위원 수 확대하는데 지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기획처장관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심의회는 전문위원 의견은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심의회는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꼭 필요하면 해도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박수영 위원 차관님 답변이 좀 헛갈려서 그런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기획예산처가 새로 생겼으니까 들어가는 게 맞아서 25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그 밑의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이것은 굳이 늘리지 않아도 된다, 7명 이내로 돼 있는 것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차관님, 정부 의견이 어느 쪽이냐고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정부 의견은 7명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이 좀 헛갈려서 제가 확인을 좀……

○박대출 위원 늘려 주면 좋은데 안 늘려 줘도 그만이다 이 얘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 답변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20쪽에 있어서는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기여 근거를 만드는 데 대해서 당연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에서 이견 없으면 이것도……

○박수영 위원 다만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말씀 올리자면 이게 상생 차원에서 스스로 원해서 내는 거여야지, 정부에서 팔을 비틀어서 내서는 안 된다. 이걸 앞으로 운용하실 때 충분히 숙지하시고 운용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넣은 이유가 기업이 스스로 해서 자기 협력업체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지난번에 현대자동차가 출연을 하고 그 금액으로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들을 도와주는 사업에 썼거든요. 바로 그런 식의 스스로 원하는 사업에 해야지, 내기 싫은데 팔을 비틀어서 내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것도 의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정 의결입니다.

다음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다음에 공급망기금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로 확대하는 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 벤처기업 여신 조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경우 투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했듯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 공급망기금의 선순위 지분 출자 등을 통해서 손실 최소화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벤처투자, 신기술투자조합 추가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도걸 의원님처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하셨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안은 안도걸 의원처럼 폭넓게 규정했을 경우에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것의 수정안에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정부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결과적으로는 안도걸 의원처럼 폭넓게 넓혀 가지고 수정안에 넣는 걸로, 거기에 동의하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수정안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공급망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치의무를 넣는 그게 수정안인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차규근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차관님, 차관님이 이해를 하고 계신지 내가 잘 몰라서…… 지금 나온 법 개정안은 기존의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라 벤처라든지 신기술에도 투자하자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 경우에 돈이 공급망이 아닌 다른 쪽에 쓰여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이 낸 수정의견입니다. 지금 이해하시고 답변하신 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안도걸 의원님 수정안에다가 저희가 제시한 6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벤처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만 하면 수정안이 필요가 없고, 그런데 안도걸 의원처럼 폭을 더 넓힐 경우에는 이게 다른 데 엉뚱한 데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안도걸 의원안으로 폭넓게 갈 거냐 우선 먼저 그걸 정하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수정안은 당연히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도걸 의원안처럼 폭넓게 규정하면서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27쪽의 우선매수권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의 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매수권 자체가 하나의 예외적 조항이고 해외 기업의 경우 이것이 행사될 경우에는 국부 유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갖다가 해외 기업만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WTO 보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시듯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적합하지 않은가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우선매수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찬성하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임의규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임의규정으로?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리고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 해외 법인인 경우에 WTO 규정에 분명하게 위배가 되나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권영세 위원 해외 법인에 그걸 금지할 경우에? 그러니까 국내 기업인 경우에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에는 안 줄 경우에 WTO 규정에 분명히 위배가 되나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지 안 그런지가 중요하지.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태평양 법률 자문 쪽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래서 해외 기업에 차별을 했을 경우에 WTO에 위배된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국내 기업과 차별을 할 경우에.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폐지하고 수정의견으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합니다.

그다음에 부칙,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의사일정 5항부터 6항입니다.

한정애·안도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위 자료 38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입법 배경입니다. 최근에 방위산업, 원전 등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글로벌 수주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수출금융 지원체계에서는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수출입은행의 경우에 동일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한편 이처럼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수출 수주에 따른 이익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수출 수주에 동반되는 구매자금, 절충교역 등의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수출 수주에 따른 위험을 부담함에도 그 혜택은 수출기업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있어서 수출기업에 대한 이익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대규모·장기 수출계약 수주를 전폭 지원하는 동시에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출 수주에 따른 이익을 타 수출금융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으로 환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대규모·장기 수출계약 수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생태계 성장 및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제정안은 현행 수출금융 지원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전략수출 분야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행 지원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 대규모·장기 신시장 수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및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수출 수주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기업이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납부의무자로 특정되는 경우에 역외보조금 논란 등 통상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은 수출기업에게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여기서 의결할 거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계속하시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이어서 41쪽, 총칙입니다.

먼저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의 조항에서는 수출, 전략수출,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이나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현행 법률에 따른 수출금융지원 대상과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략수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전략수출의 판단기준·범위를 법률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전략수출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43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한정에 의원안과 안도걸 의원안의 비교가 있는데요, 제2조 2호에 보시면 전략수출의 정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 해 가지고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에서 표를 보시면 두 개의 계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금융지원계정하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출금융지원계정의 경우에 재원을 보시면 정부 출연금, 정책금융기관 출연금,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으로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안도걸 의원안에서는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서는 재원을 보시면 지원계정에서 출자·투자한 회사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차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앞의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상생기여금을 이쪽에 끌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한정에 의원안에서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등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결산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재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금 채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을 보았습니다.

수출금융지원계정의 경우에는 특별히 연계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서는 한정에 의원안의 경우에 정부납부기술료가 있는데 기술료가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중에는 전략수출 분야와 무관한 기관도 포함되어 있고 또 수출성과와 무관한 수익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납부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지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7쪽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적 사업 추진 필요성과 채원 조달과 사업 추진의 중장기적 안정성도 인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금 설치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목적과 채원·용도를 전략수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54쪽 되겠습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채권의 위험 관리 방안 및 적정 발행 규모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재경부에서는 정확한 채권 발행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55쪽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금 규모나 채권 발행 규모 등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적정한 상환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한국산업은행법 같은 경우에는 기안기금이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시행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 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운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금의 조성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제한한다 해 가

지고 이런 규정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자금지원 및 전략수출기금운용심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 지원을 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다만 심의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되 이후 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략수출의 특성상 대규모·장기 지원의 비중이 높고 기금의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서 다른 수출금융지원에 비해 엄격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고 국가의 출연금 및 보증채무가 투입되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의 생략 기준을 심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법률에 대략적으로 명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심의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자금 지원에 대한 재정부의 사후감독을 추가하는 등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8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 심의 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4번, 전략수출상생기여금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먼저 기여금의 산정·감면과 관련해서 납부의무자를 구매자금 지원, 낙찰조건부 지원, 절충교역 등 지원과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정 방식은 해당 지원 집행금액의 1% 이내로 하되 방위산업발전법상 지원의 경우에는 5% 이내로 부과요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자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쪽, 기여금의 납부·징수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금융지원 승인하면 곧바로 2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 대한 내역을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지원을 실제 집행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2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납부 방법입니다.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체납 절차는 기여금 체납액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여금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일단 수출금융지원계정에 다 귀속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은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생기여금은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이므로 부담금 설치가 적절한지 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여금 납부의무자의 범위 및 부과요율과 관련해서는 먼저 납부의무자와 관련해서 납부의무자를 전략수출 분야에서 수출계약이 체결된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또

한 제정안은 방산분야 수출기업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여금의 용도도 방산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6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요율에 관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매자금 등 공급 규모, 현행 수출금융지원의 금리, 수출 수주에 따른 영업이익 및 기여금 납부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적정 부과요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2번, 기여금 부과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여금은 그 집행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하고 수출 수주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가급적 구체적이고 한정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발전법의 지원 사항 중에는 애로 사항 해결 지원, 교육훈련 등 그 집행금액이 정확히 산출되기 어렵거나 정부가 별도의 위험 부담을 감당하지 않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지원금액을 보다 한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낙찰조건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인용하도록 했는데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번, 기여금의 존속기한과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부담금의 존속기한이나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금의 존속기한과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절차를 법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5쪽입니다.

한편 기여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 해당되므로 기여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산업통상부 의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PC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 시 예상되는 수익률은 통상 3% 내외로 기업에 최대 1%의 기여금이 부과되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역외보조금 논란 등으로 원전 수주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고, 3번 보시면 선박금융의 경우에 수주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보칙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끝부분에 보시면 심의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5쪽의 부칙 사항입니다.

먼저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은 적정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뒤의 ‘이 경우’ 부분은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

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게 제정법이라서 죽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수영 위원 아무래도 제정법이다 보니까 봐야 되는 조문도 많고 좀 복잡한데 전문 위원이 검토하는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수출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할 텐데 그 스킴(scheme)이, 제도가 이렇게 형성된 건지 또는 이게 다 커버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역시 제정법이니가 소위에서라도 아니면 전체회의에서라도 하루 잡아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공청회를 한번 하고 좀 시야를 넓혀 놓고 조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저도 쉽게 지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심사자료 올라오기 전에 절차로 공청회도 좀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건데 내용부터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복잡하다는 내용밖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이견이나……

○권영세 위원 원래 내려오기 전에 우리 전체회의에서 했어야 했어요.

○박대출 위원 그래서 이게 소위 심사자료로 올라온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미 공청회 절차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심사자료가 정리가 좀 되고 또 부처 간에……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내용을 종합하자면 정부부처들도 이견이나 우려가 많고 업계에서도 이견이나 우려가 많고 또 고려하고 정리해야 될 요소들도 많은데 일독을 한번, 우리가 소위 차원에서 공부를 한번 하자는 의미 외에는 이럴 수가 없는데. 이래 가지고 공부가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절차를 새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권영세 위원님.

○권영세 위원 우선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에 맞는 절차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저는 이 법이 특별히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청회 과정에서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재정부의 태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아까 지나간 문제지만 공급망 안정화 관리법에서 ‘이게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느냐’라고 내가 질문했을 때, 사실 아까 내가 지적을 하려다 놔두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대통령실이 아니라요,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법률 자문입니다.

○권영세 위원 아, 태평양에서요.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지요. 죄송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얘기를 마칠게

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럼요,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또 다른 위원님?

○김영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정법이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있어서 제정법의 이 상황을 저희들이 하는 것대로 조금 열어 놓고 공청회를 하고 좀 좁혀서 소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간사님들끼리 상의해서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문 조문 다 하기에는 내용의 숙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특성상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 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공청회 하고 소위 다시 열어서 의견들을 다시 모아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박대출 위원 필요하다면 중간에 입장 정리하는 단계도 좀 거쳐 가지고 소위에 올려 보내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소위에서도 정리 못 해요, 공청회를 하더라도.

○권영세 위원 일단 절차를 밟고요. 빨리하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 공청회는 법률적으로 의무인가요?

○전문위원 임명현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생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생략이 돼요?

○전문위원 임명현 의결로 생략……

○권영세 위원 의결로 해야 되지요,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정태호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영 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통상……

○소위원장 정태호 생략을 하려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전문위원 임명현 소위 차원에서 하려면 소위 차원의 간담회나……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소위 차원에서는 생략 여부를……

○전문위원 임명현 생략하려면 전체회의에서…… 보통은 다 심사해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생략 의결을 법안 의결할 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내가 사회 본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

어저께 조세소위 때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린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소위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공청회를 안 할 방법은 이 자리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요청을 하시니까 공청회를 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하고 그리고 소위 바로 열어서 결론 짓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차규근 위원 그 전에, 저도 기본적으로 공청회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만 있었고 정부 입장은 들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공청회까지 거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청회 전이라도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러시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수주 수요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수은이나 이쪽에서 파이낸싱을 해 왔는데 수은 같은 경우는 파이낸싱 기준이 보통 동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40%, 동일 계열은 한 50% 정도 이 정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자본은 한 23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40% 한다고 해도 한 80억 불이나 70억 불 정도면 그 이상은 수은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전성의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정상들과 많이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수주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기관을 넘어서는 다른 주머니를 하나 커다랗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이번의 전략수출금융기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수출금융기금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행해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요. 그 외 말씀하셨듯이 상생기여금 같은 것도 일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수은이나 산업은행의 기금 출자나 출연 같은 것도, 정부 출연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규모를 생각할 때는 역시 채권 발행, 국회의 동의를 얻은 채권 발행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100억 불, 200억 불이 넘어서는 체코 원전 같은 경우나 이런 거대 산업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딩(bidding)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존의 단순한 지원 시스템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사실 저희 문제의식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소위원장 정태호 이게 뭐 시급성 같은 게 있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혁신성장실장 민경설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말씀하세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잘 아시다시피 폴란드에 방산 수출을 한 게 재작년 그 정도 되는데 총 440억 불을 한 바 있습니다. 440억 불 중에서 몇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가 123억 불, 2차가 한 100억 불 정도 됩니다.

1차 123억 불 중에서 수은하고 무보가 50억 불씩 해서 100억 불을 했고요. 2차에서는 수은, 무보가 합쳐서 한 52억 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보면 한 150억 불 정도가 되다 보니까 두 기관이 목이 딱 차 버려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폴란드에 대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수은하고 무보에서는 할 수 없게 되고 그

러면 우리 기업들, 특히 현대로템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폴란드 직접 수출이 제약 요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별도의 기금을 만들게 되면 그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우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겠네, 이것은.

제정안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상 공청회라든지 또 기존에 정부부처 간의, 관련 업계의 입장 정리를 하는 이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권영세 선배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취지하고 현재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취지로 보면 수출 활성화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박대출 위원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부분을 걱정하는 거고. 그중에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들 오른 호주머니에 있는 것 꺼내 갖고 윈 호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이것을 한다는 그런 것도 지적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방산업계나 관련 업계에서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이 법안이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찬반 논쟁부터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해야 될 법안 같아요.

제가 그냥 절차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이것은 서두를 법안이 아니고 소위에서 지금 바로 다룰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지적만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정리 안 돼서, 산자부에서도 지금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방산업계에서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박대출 위원 그런 현실부터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말씀하십시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말씀하셨듯이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사실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 공청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다만 시급성을 고려해서 공청회와 함께 법안소위 일정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상생기여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상생기여금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는 기업의 극히 일부 최소한만 하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에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음을, 최대한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같이……

○박대출 위원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갑과 을의 위치여서.

○소위원장 정태호 권영세 위원님.

○권영세 위원 아까 왼쪽에 계시는 분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폴란드 방산 수주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업을 결과적으로 돕는

거지만 이게 수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측면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보증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보증을 수은이 하자니 지금 자본금 그 40%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난 정부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별도 기금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지, 결국은 이것 수은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관리 수은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수은의 구조에 관한 것을 고쳐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좀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게 공청회를 한 번 하고 그 뒤에 우리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이게 폴란드 방산 수출할 때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로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출을 해 주거나 차관을 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부의 큰 특혜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상생기여금을 받아서 관련 분야의 중견·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산 생태계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권영세 위원 판매기업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활로가 열리는 거니까 혜택을 받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어차피 박수영 간사님하고 다음 주에 소위를 여는 걸로 이미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박수영 위원 이 소위가 아니고 조세소위.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조세소위. 그래서 하여튼 경제재정소위는 제가 위원장이니까 제가 날짜 정할 수 있지 않나요?

○박수영 위원 물론 저하고 협의한 것은 조세소위라는 뜻이지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간사님에 대한 신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분은 공청회를 빨리 열고 소위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같은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1권은 지금 9번까지라서 의사일정 9번까지를 공청회로 넘기고 다음 소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권입니다.

2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인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 한 번 짚 보고, 이것도 제정법이라서 어차피 공청회로 넘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지난번에 대체 토론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지는 죽 한번 설명을 듣고 공청회로 넘기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2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보시면 제정안의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정안 비교표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적용 제외 범위와 관련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해당 규정이 없고 윤준병·김영환·최은석 의원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위원장 2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고 계획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송언석 의원, 김영환 의원께서 안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 전환 및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지원에 관한 사항이 송언석·김영환 의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조항이 또 송언석·김영환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전 의원님들 안에 공통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학과 등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이 최은석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 안에 있고요.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와 관련해서 송언석·윤준병 의원안에 있고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모든 의원 발의안에 다 있습니다.

다음, 8쪽에 보시면 전문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도 공통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서비스산업협회와 관련해서는 최은석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통계 작성·관리도 세 분 의원안에 있습니다.

과거 논의 경과를 보시면 18대부터 해서 21대까지 계속해 왔고요. 특이한 것은 18대를 제외한 19·20·21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본법 제정 필요성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법 목적) 보시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송언석 의원안과 김영환 의원안은 최근의 기술 동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서비스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그리고 김영환 의원안에는 인공지능·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융복합화의 확산,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등 이런 위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부에 설치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주도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전략하에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둘째, 부처 간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논의·조정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를 보시면 몇 가지 규제 때문에 신사업 육성이 저해된 사례가 있습니다. 숙박 분야, 모빌리티 분야, 금융, 법률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비스산업의 범주가 광범위하고 업종별 특성과 발전전략이 상이하므로 서비스산업 발전은 업종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미 개별 법률을 통해서 여러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라는 점이고. 둘째, 제정안은 정책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 양성, 협회 설립 등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까지 재정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셋째, 현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전략과 그에 따라 파생된 산업 특수성에 기인한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넷째, 동 법안은 제정법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 실시 여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릴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검토의견을 죽 한번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17쪽입니다.

정의 조항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23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보건·의료 분야를 적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7쪽 보시면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 5년 주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항은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과학기술 관련 사항이 있으면 과학기술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인데 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공히 규정하고 있고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이 위촉하는데 윤준병·김영환 의원안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 제시를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갈등조정기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송언석·김영환 의원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의원안은 추가로 갈등 당사자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

단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기구의 위원은 서비스산업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연구개발 활성화,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또 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79쪽부터는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비스산업 융복합 활성화와 서비스 신사업 창출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융복합 지원 및 혁신지원단 관련해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 전환이나 서비스산업 간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밑에 협의체로서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신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송언석·김영환 의원안은 법령이나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정부 및 지자체가 거부, 반려 또는 불합리한 보완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김영환 의원안은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의 적용 및 제재 처분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비조치의견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또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옴부즈만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서비스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서비스산업 중에서 중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위원님들께서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안에서는 추가로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의 서비스산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창업 지원, 세제지원, 서비스 수출 지원, 서비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7쪽에서는 서비스산업 협회 설립과 관련해서 최은석 의원안에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죽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시 제정법이기에 때문에 당연히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것을 다음 소위 때는 공청회 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조항마다 바로바로 심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 법이 처음 나온 게 이명박 대통령 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의약 관련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계속 협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쪽 내용을 보시면 그런 흔적들이 좀 보여지지요.

예를 들어서 의약 5법 같은 경우가 지금 적용 배제가 돼 있고, 아마 최근에 참여연대 쪽에서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성명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충분히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공청회 절차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이것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중요한 법안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재정부에서 소관 법률로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더더구나 옛날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예산과 기획 업무는 떨어져 나가서 다른 부처로 갔는데 사실 세제밖에 없지요. 세제를 가진 재정부에서 이것을 소관 법률로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저는 내용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특정 산업의 발전이라면 차라리 산업부가 한다든지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기획예산처가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왜 재정부에서 이걸 할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공청회 때……

○**김영환 위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까지 기재부가 서비스산업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 왔는지 연혁을 좀 설명해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설명해 보시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책임을 계속 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라든지 이런 특정 부문만 중점을 두는 그러한 데와 다르게 경제 전체를 다 보면서 조율과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사실 상 이 서비스발전법은 아시다시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십수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많이 순화가 됐고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기재부가 왜 이걸 하느냐 하는 거는, 이 서비스발전법은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개별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권을 줍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처가 모든 산업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빈 공간이 있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충돌되는 거나 그런 게 있어서 조정이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발전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픽처를 그려서 어느 방향으로 서비스가 나가야 되느냐 그걸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어느 분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는 융복합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융복합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바로 이 서비스발전 기본법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세 위원 뭐 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여기도 보면 참고표에서 19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21대까지 쭉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안 됐던 이유가 보건의료 부분 포함 여부가 문제가 돼서 그랬나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것도 간사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 일정을 잡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권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통계법 그다음에 공운위법, 4개가 되는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수출입은행장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검토의견 보시면, 중간에 관련 조문 보시면 한국투자공사하고 항만공사도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따로 뒤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장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임원 전체에 대해서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말씀하신 검토 내용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이견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은석 의원안에 대한 지난 소위 심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등록 규제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등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그 밖의 전문외국환업무 규율체계 개편이나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해외직접투자와 자본거래 정의 정비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다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최은석 의원안과 최기상 의원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체업자가 그 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제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이체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기상 의원안은 이에 더해 가상자산거래 중개업무, 고객과의 거래에 대한 확인 의무, 재정부의 감독 및 보고·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규율하여 사실상 가상자산거래를 외국환거래에 준하여 규제하려는 내용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가상자산 개념과 관련해서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은석 의원안은 후단에서 가상자산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가상자산의 개념 및 유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체계 내에서 규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 경우 동일 개념에 대한 규율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최기상 의원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했습니다.

22쪽,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개념과 관련해서 최은석 의원안은 ‘이체’라는 표현을 쓰고 최기상 의원안은 ‘거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이전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3쪽, 최은석 의원안은 가상자산의 이전의 개념을 본문에서 괄호로 표시하여 정의하면서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최기상 의원안은 법률의 정의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이전은 각 법안이 규제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기상 의원안과 같이 이를 법률의 정의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이므로 개념 정의 시 이를 국경 간 거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내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전과 같이 실질적으로 국경 간 거래로 볼 수 있는 개념도 포괄할 필요가 있고 향후 기술 발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 최은석 의원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체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최기상 의원안은 외국환업무의 등록과 동일하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자 등록의 경우 그동안 존재하지 않던 의무가 신설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법률에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5쪽 보시면 체계·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는 외국환업무와 차별화된다는 점 그리고 외국환중개업무보다는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와 업무의 유사성이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9조의2가 아닌 제8조의2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이것은 기타 수정사항입니다. 안 12조(인가의 취소 등)나 그다음에 안 20조(보고·검사) 그다음에 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체계·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최기상 의원안에서 추가로 더 들어간 내용에 관련된 검토 사항입니다.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하고 확인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먼저 최기상 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사전에 재경부장관 인가를 받도록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데 그 중개업무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경부는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중개업무의 인가 등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기상 의원안은 확인의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세부 규율 방안 마련 후에 하위규정과 같이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밖에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내부거래 금지,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재경부의 관리감독 등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에 맞는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지난 소위의 논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니다.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정안대로 개정하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도 개정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67쪽의 해외직접투자와 자본거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래 심사 결과를 보시면 법체계상 해외직접투자는 자본거래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설치 및 관련 자금 지급을 자본거래에서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에만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현행 정의를 유지하되, 다만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자본거래에서 제외하면서 자본거래에 포함되는 개념인 해외직접투자에는 포함시키고 있어서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정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의 직권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심사 결과를 보시면 직권취소 근거 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이 부분은 김태선 의원안 관련된 사항입니다.

외화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인데 검토의견 보시면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은 14일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최은석·최기상·김태선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적정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최은석 의원안의 제8조제3항과 같이 전문외국환업무 범위를 개편하는 경우에 기존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등록한 자의 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10쪽의 1번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정 신설, 정부 의견이요.

전문위원이 즉 설명을 하셨으니까 결정사항 하나하나마다 정부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결정하고 갈 테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첫 번째로 17쪽의……

○소위원장 정태호 17쪽?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정태호 10쪽에는 문제없다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17쪽의 가상자산의 종류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삭제……

○소위원장 정태호 이건 표인데? 심사보고서 17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21쪽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21쪽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개념 정의인데요. 여기서 가상자산의 개념 및 유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종류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을 삭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아까 대안으로 최기상 의원안에 동의한다고 전문위원님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그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같은 거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같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리고요.

검토의견 2번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 요건 구체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최은석 의원안의 ‘이체’, 최기상 의원안의 ‘거래’ 표현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권영세 위원 22페이지?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22페이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개념 정리를 ‘이전’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이전’으로 용어 통일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박대출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전’이라는 표현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 ‘이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면 모든 개념을 다 포괄하나요? 여기 최기상 의원안 보면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해 가지고 이전은 협의적 개념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 임명현 이 법의 취지가 국경 간 거래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국경 간에 이전하는 것을 규율하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체 그러면 국내에서도 국내사업자 간에도 서로 이체하고 그러니까 국경 간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이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최기상 의원안 정의에 보면요 ‘거래란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인데 뭘 통해서 이전하느냐,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이라는 개념이 협의적인 이전이라는 개념이 있고 광의적인 이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이라는 말을 해 버리면 협의고 광의고 다 포함하게 되고 이것은 이전이 없고, 이 용어를 둘러싼 해석이 난무할 가능성은 없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의견 주세요.

전문위원님부터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밑에 관련 조문 보시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하면서 후단에 보시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이전이 뭐다 이렇게 규율이 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정의를 보면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거라고 법률에 돼 있거든요. ‘거래 또는 이전’ 해 가지고 거래와 이전이 다른 개념으로 여기 이해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이라는 표현이 거래도 포함을 하고 다 하는 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용어에 따른 차이점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거래라는 표현을 쓰면……

○박대출 위원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2조 1호는 여기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해 가지고 거래와 이전이 다른 개념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전이라는 표현이 거래도 포함시켜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매도·매수도

되고 교환도 되고 보관도 되고 관리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리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설명도 지금 제대로 못 하시네.

○전문위원 임명현 거래 하면 매도·매수·교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매도나 매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전이라는 개념이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거래는 이전과 다른 개념인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달라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박대출 위원 이전으로 통일하자고 그랬잖아요, 통일.

○전문위원 임명현 그래서 용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박대출 위원 아니, 거래는 이전과 다르다고 그랬는데 또 뒤에서는 이전이라는 것은 거래를 포함하는 용어로 통일한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걸 헷갈릴 수 있겠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저도 박대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가는 게 되게 혼란스러운 게 23페이지에 원래 최기상 의원안은 거래라는 개념에는 매도·매수·교환·이전, 이전은 그냥 거래 중의 하나로 돼 있는데 22페이지의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개념 거기에 보면 최기상 의원안은 가상자산의 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차여차하기 때문에 정합성 때문에 이전으로 통일할 필요…… 분명히 23페이지 오른쪽에는 거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왼쪽에는 그냥 거래를 이전으로 통일해 버리면 23페이지의 이전 이외의 매도·매수·교환·보관·관리는 포섭이 안 되는데, 이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박대출 위원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걸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넘어갑시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담당 국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라는 개념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데 저희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은 가상자산의 소유주들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A라는 소유주에서 B라는 소유주로 옮겨 주는 행위, 그 행위만을 보고하도록 규율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에서는 거래라는 표현이나 매도·매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을 규율할 필요가 없고요. 순수하게 그야말로 이전시켜 주는 행위 그것만 규율하면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하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박대출 위원 그러면 그게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설명이 안 되는……

○권영세 위원 먼저 법이 좀 잘못돼 있네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차규근 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최기상 의원 법안 자체에서 약간 모순이 있

있다는 말인가요? 최기상 의원 법안의 정의 조항에서 거래를 매도·매수·교환·이전 이렇게 하면서 최기상 의원 본인 안에 또 다른 데에서는 거래를 이전의 개념으로 쓰는 바람에 최기상 의원안 자체 안에서 법체계 정합성이, 용어에 혼란이 있었다,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예, 뒤에 계속 나오지만 최기상 의원님 안은 중개업무는 인가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개업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저희 법에서는 중개업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는 없는 단계라고 의견을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방금 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법에서 규율이 필요한 부분은 순수하게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A라는 소유자에서 B라는 소유자로 옮겨 주는 업무 그것만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요. 그게 최은석 의원님 안의 취지와 같은데 최은석 의원님 안에서는 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체라는 용어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그 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저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데, 23쪽 한번 보시면 최기상 의원안 있지요? 제3조(정의) 조항에 23호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가상자산거래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 이전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다음 줄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정의 안에서 이전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조금……

최기상 의원안은 아마 정부가 드린 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좀……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최은석 의원님 안이 저희……

○박수영 위원 정부안이었습니까?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예, 그런 거고요.

○박수영 위원 하여튼 여기 이전이 두 번 나오는 데다가 가상자산 보호법에 또 이전이 나오니까 이전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돼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복잡한데 이것을 외국환관리법에서 꼭 규율을 해야 됩니까? 가상자산 쪽에, 정무위 쪽에서 하는 법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꼭 규율해야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정무위에서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자산법은 순수하게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거래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어서 대외 지급수단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국경 간 거래를 외환 당국이 파악하는 게 취지고 내용이지요. 그런데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저희가 모니터를 안 하면 앞으로 이게 계속 확대될 텐데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가 절반이, 크게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 이전 부분은 여전히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법의 취지를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돼. 이체라는 용어, 거래라는 용어, 이전이라는 용어, 교환이라는 용어, 보관이라는 용어, 관리라는 용어, 매도라는 용어, 매수에 대한 용어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일반 용어들로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것을 토대로 여기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을 해야지. 이 법에서 이전이라 함은 소유권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든지 조건이 맞춰지도록 가야 된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권영세 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거래의 형태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가상자산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이니까 가치가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또 국내로 이전되는 것만 국한해서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전이라고 통일한 것 같은데 문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전과 거래를 그냥 병렬적으로 씬으로 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그런데 그것은 최기상 의원님 안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요.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최기상 의원안은 개별 거래 중의 하나로 이전을 넣기도 하고 또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전을 또 넣었으니까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초적으로 급하게 만든 법이고요.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제정법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는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통과될지 내년에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제금융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이라는 것이 국경 간 거래를 통해서 악용되는 소지가 현재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폐가치에 준하는 외국환거래법상으로 등록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하는 개정안으로서 이것이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아까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셨던—개념들이 다 구분돼 있는데 그게 아직 법률로 성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서 양쪽 의원님의 안들이 혼선이 있지만 도리어 외국환거래법에서 준용하는 목적에 맞게끔 양 안의 대안을 전문위원실하고 재경부가 논의해 와서 제시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여기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오면 좀 더 복잡한 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거는 여하튼 용어 정리에 관한 문제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로 이 용어에 따르는 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류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2번,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 요건 구체화.

참고로 회의는 16시까지 합니다. 5시 30분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해 가지고 4시까지밖에 못 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23쪽의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개념을 법률 정의 조항에서 별도로 명시하되 기술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이제 검토의견 1이 끝난 거네요.

검토의견 2번.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록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용을 하면……

그다음에 체계 및 자구 수정.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25쪽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규정은 제8조의2로 규정된다는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은 제9조보다는 제8조 업무와 유사한바 정부 측도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대안을 수용하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정태호 대안 수용이요.

다음이요.

26페이지 검토의견 3번, 기타 수정사항.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인가의 취소 등 대상에 가상자산이전업자 추가가 필요하며 등록 취소 후 3년간 재등록 불가 규정을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과 동일하게 자산이전업자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국회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자가 업무의 등록사항 변경·폐지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의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위해 처분 대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환 규제 준수 유도 및 업종 간 형평성 측면에서 등록 취소 후 3년간 재등록 불가 규정 적용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기타 수정사항이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정태호 대안에 동의한다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대안 동의입니다.

보고·검사 이것도요?

27페이지, 보고·검사.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재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검사 권한이 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용이지요?

다음 30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30쪽입니다.

외국환취급기관과 같이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대안을 수용하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대안 수용입니다.

밑에 몰수.

대안 수용?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대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몰수 부분도 대안 수용인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31페이지, 검토의견 4번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 및 확인의무 등.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이 내용도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게 수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명현 수용하면 최기상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중개의무하고 확인의무는 이 법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최기상 의원 입장을 수용하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오케이.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대안을 수용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참 뒤로 가는데요.

그다음에 63페이지, 지난 소위원회 결과는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은 개정안 원안대로 개정한다’, 이게 심사 결과였잖아요?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안 원안대로 소위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67페이지, 해외직접투자와 자본거래 정의 정비하는 건데 심사 결과 현행 정의를 유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 심사 결과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68페이지 표의 제3조(정의) 해 가지고 이걸 심사 결과로 하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69페이지의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개정안 원안대로 개정합니다. 이것도 소위에서의 결론이고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70페이지,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하여 재경부장관의 직권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건데 이것도 심사 결과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73페이지,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는 건데 이의신청을 30일 이내에 그다음에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경부 수용이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검토의견은 수용이잖아요. 그대로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소위원장 정태호 73페이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부칙, 시행일에 관한 부분인데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맞습니까?

○전문위원 임명현 예, 맞습니다, 경과규칙.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용이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국 정의에 관한 부분만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간사한테 맡겨 주셔 가지고 간사가 전문위원님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볼 게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과 그 법 간에 개념 정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요?

○전문위원 임명현 저희가 문구를 작성할 때 최대한 현행법 틀에서 했기 때문에 새로

충돌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별로 없나?

○박대출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자세히는 안 읽었는데 이것 읽다 보니까 용어들이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혼재돼 있다고. 법문이나 해설, 검토의견 여기를 보니까 이전, 거래 뭐 이런 것, 취급 업무…… 용어들이 전부 다 달라.

○권영세 위원 기본법 만들 때 혹시 다른 게 좀 정리가 안 된 게 있으면 그때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그때 정리를 하지요.

○박대출 위원 어떤 것은 거래라 돼 있고 어떤 건 취급이라 돼 있고 용어들이 엄청 달라.

○김영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근본적으로 이전에 관한 것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하고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거기서도 규정하고 저희 소위 자료 23페이지 대안에서도 여기서 명확하게 이전이 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개념에…… 외국환거래법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거래소에서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옮겨 가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게 외국환거래법의 취지 아닌가요? 그래서 그 이전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그러니까 외국환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는 그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그래서 우리나라 업비트라는,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외국에 있는 어떤 거래소로 가상자산이 넘어가거나 또는 우리나라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개인 가상자산 지갑으로 넘어가는 것, 저희는 이것만 거래소가 외환전산망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김영환 위원 그래야 추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의에 관한 문제는 넘겨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처리하고 갈게요. 4시까지 5분 남았습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구자근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간단한 거니까 보고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소위 자료 80쪽입니다.

국가통계위원회 관련해서 구자근·김병기 의원안 공통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을 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병기 의원안은 국가통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총리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81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저희가 민간공동위원장 주요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네 군데가 있었는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규제개혁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장을 공히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는 총리가 지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부칙, 시행일 관련해서는 구자근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고 김병기 의원안은 공포한 날인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유예기간 3개월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 국가통계위원회 경과조치인데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존에 위촉된 위원 임기만료 시까지 개정안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뭐예요?

○전문위원 임명현 저의 의견은 현행 국가통계위원회로 명칭은 가고 그다음에……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부칙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 구자근 의원안을 찬성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명현 예,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유예 경과고요. 경과조치 뒤에 두 번째는 구자근 의원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공포 후 3개월.

정부 의견이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만 말씀하신 공동위원장 지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보다는 총리 지명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서 국무총리 지명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기존의 대통령직속위원회도 총리 소속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총리가 지명하는 것도…… 또 법제처 의견도 이것은 입법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 지금 이게 공동위원장이 국무총리인데 다른 공동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가요? 지금 내가 잘 못 들어서……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다른 사례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이것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가 지명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자기 옆의 사람을 자기 위에서 지명을 해야지 자기 옆의 사람을 자기가 고르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국무총리…… 그게 견제도 되고 이런 부분을 노렸을 텐데 국무총리가 자기와 같이 일할 사람을 자기가 뽑는 것이 협업은 잘될지 모르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공동위원장제로 하는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 취지가 뭐니까?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아무래도 국무총리께서도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민간의 전문성도 저희들이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공동위원장을 운영하면 대면회의도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도 국무총리가 지명해서 공동위원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여기 네 가지 민간공동위원장 주요 사례는 다 민간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걸로 돼 있네요.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혹시 부처의 장관들이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공동위원장 체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공동위원장을 지명할 때 호선해서 다 하는지 아니면 국무총리가 지명해서, 이를테면 위에서 지명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지, 사례들이 어떻습니까?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지금 호선을 해서 공동위원장을 하는 사례도 있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또 국무총리가 지명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법제처 의견은……

○김영환 위원 사례는 다양하다 이거지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사례가 다양해서 입법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영진 위원 일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긴 하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오늘은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 대로 가는 걸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부칙 조항은 3개월로 해도 되나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고 부칙 조항은 3개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위원장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명칭은 국가통계위원회고 김병기 의원안은 보면 심의·의결사항에 추가 사항이 있는데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렇지요. 그대로 국가통계위원회로 하는 거지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 취지는 국가데이터법이 만들어지니까, 국가데이터위원회가 별도로 생기니까 이것은 그 하위 개념으로서 통계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지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차규근 위원 법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소위원장 정태호 예.

○차규근 위원 차관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셔서 그런지 진행이 뭔가 조금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안 내용이나 사전에 검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신 상태에서 간결·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앞으로 회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처음이시라 그런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는 명심하셔야 되는 게 어제도 국민성장펀드를 설명하는데 위원님들보다도 더 파악이 안 돼서 오셨어요. 그런 일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오늘 다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운법이 빨리 처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논의만 하고 있고 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못했는데 아까 박수영 간사님하고 어쨌든 빨리 공청회 하고 저희 소위를 빨리 소집하는 걸로 대충 이 안에서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공청회 날짜를 신속히 정하고 소위를 빨리 소집해서 나머지 부분도 빨리 심의를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준비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4시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급망법에 대한 대안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관련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계법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허장 재경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임명현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박대출 박민규 박수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청가 위원(2인)

조승래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국가데이터처

차장 이명호